

수원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273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피고, 항소인 C

변호사 김수권 변호사 박종훈

판 결 선 고 2022. 7. 6.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4. 선고 2020가합1323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상황의무”를 “상환의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법무법인(유한) W의 변론재개 신청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W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기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의 전체 경과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유한) W의 신청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출하려는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론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남양우, 판사 허양윤, 판사 정현식

별지

목 록

1. 부산 사상구 N 공장용지 980.5㎡
2. 부산 사상구 O 공장용지 980.5㎡
3. 부산 사상구 P 공장용지 2402.9㎡
4. 부산 사상구 사상구 O, N에 있는 D회사Q동
일반철골구조
프리보드판넬지붕 단층공장
581.06㎡
5. 부산 사상구 O, N에 있는 D회사S동
일반철골구조
프리보드판넬지붕 단층공장
621.98㎡
6. 부산 사상구 O, N에 있는 D회사T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사무실
1층 166.573㎡
2층 154.573㎡
3층 145.423㎡
4층 118.573㎡
5층 138.973㎡

7.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U동

일반철골구조 박공지붕

단층공장

1679.79㎡. 끝.

